

입양 보조금 (Adoption Assistance)

연금국은 적격 가입자에게 입양 관련 지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양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양 보조금

연금국은 자격을 갖춘 가입자가 입양을 할 경우 입양 관련 지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 비용, 입양 기관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자금 중 일부는 **Relief of Conscience 기금**으로부터 조달됩니다.

금액

입양 자녀 1 인당 \$6,500.

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교단 소속 교회, 노회와 대회, 교단 기관 또는 제휴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고,
- 의료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입양 자녀는 21 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국내 입양:** 최종 입양 결정서 사본
- **국제 입양:** 최종 입양 결정서 및 자녀의 여권 또는 자녀를 모국에서 미국으로 이주시켜도 된다는 허가서 사본

추가 지원

입양 비용이 이용 가능한 정부 세액 공제와 입양 보조금을 초과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속 노회 또는 교단 제휴 고용주가 긴급 지원 (Emergency Assistance) 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요구와 제한적인 재원으로 인해, 입양 비용에 대한 긴급 지원금은 연금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외 입양 자녀 의료 검진 혜택

연금국 의료 보험 (Highmark BCBS) 가입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해외 입양 자녀에 대한 특별한 보건 필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 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18 세 이하 입양 자녀에게 제공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 로 문의하십시오.

